

종합감사 결과

(기관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2017. 5.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대상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2. 감사범위: '13.9.7.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7.2.13.~2.17.(5일간)

- ※ 직전 종합감사: '13.9.3.~9.6.(4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 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채납처분
-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임금채권보장 업무
- 지명수배(통보) · 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작업중지명령, 사업장 지도 · 감독 업무 등

II.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 지역은 2개시·1개군(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며, 행정대상* 사업장은 16,543개소, 근로자 수는 123,095명임
- **(지역특성)** 통영지청 내 제조업의 비중은 전체의 16.4%(전국 15.0%)이나, 제조업 종사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61.2%이며 대부분은 조선업 종사
- **(고용동향)** '16.12월말 기준 관내 평균 고용률은 통영시 57.4% 거제시 63.2%, 고성군 67.8%(전국 평균 60.1%)
 - '16년도 취업률은 32.2%로 전년보다 3.5%p 증가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10,866명으로 전년보다 59.27%증가
 - * ('15년) 구직 16,449명, 취업 5,877명, ('16년) 구직 20,581명, 취업 6,418명
 - '16.12월 현재 주요 사업장의 수주량이 전년대비 85.6% 감소하여 고용율의 급격한 감소 예상
- **(노사관계)** 관내 노동조합 37개소(조합원 11,044명)중 한국노총 소속은 4개소(352명), 민주노총 소속은 4개소(8,872명)임
 - ※ 상급단체 미가입 29개소(1,820명)
 - '16.12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건이며(임단협 교섭과정 등 단기파업)
 -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요소 존재
- **(직원현황)** '17.3월 말 기준 정원 57명, 현원 53명(충원률 92.98%)
 - ※ 부산청에서 인력지원 6명(조선업 희망센터 근무 4명 포함)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 취업지원 업무, 고용보험 업무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외국인 전용보험 과태료 부과업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업무 등은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처리 업무가 일부 소홀

○ 산재예방지도 업무

- 중대재해 조사업무 처리,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작업 중지명령 해제업무 등이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총괄(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천원)				행정상조치(건)			모범 사례 (명)
실제 건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시정	개선	통보	
10	8	1	2	16*	-	3	13	2,645	2,645	-	-	1	-	1	-

*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3명(중복 처분: 3명)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① 계약절차 위반(주의)

- (위반내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거나(3건)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면서 5인 미만을 지명(6건)
- (조치사항) ○○○ 등 2명 '주의' 조치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서를 접수 즉시 고용보험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지연 접수(9건)
- (조치사항) ○○○ '주의' 조치

③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료 연체 사업장 미조치(시정)

- (위반내용) 전용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함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미개시(5개소)
- (조치사항) 연체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시정)'

④ 인턴지원금 부정수급(회수)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1개소 1명, 지원금 2,645,600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등 2,645천원 '회수 등' 조치

⑤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주의)

- (위반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고용유지대상 근로자의 근로여부, 사업장 변경 여부 등 지급요건 확인소홀
- (조치사항) 실제 휴직여부, 휴직 대상자 임금지급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명령(행정처분 포함) 등' 조치하고,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 '주의' 조치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① 신고사건 처리 업무 소홀(경고)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나, 처리과정에서 4건을 117~140일간 방치·지연 처리 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업무 소홀
- (조치사항) ○○○ 등 3명 '경고' 조치

②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업장 감독 실시 후 결과보고 지연(3건), 시정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범죄인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시정결과 수보 후 종결(5건)
- (조치사항) ○○○ '주의' 조치

※ △△△는 ① 신고사건처리 부적정과 병합하여 '경고'

다. 산재예방 분야

① 중대재해 조사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중대재해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의견 등을 보고하여야 하나 지연보고(6건), 중대재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소홀(1건)
- (조치사항) ○○○ 등 2명 '주의' 조치

②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소홀(주의)

- (위반내용) 시정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범죄인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시정결과 수보 후 종결(6건)
- (조치사항) ○○○ 등 2명 '주의' 조치

③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작업중지명령 후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서면 확인 후 현장 확인 없이 명령 해제(17건)
- (조치사항) ○○○ 등 4명 '주의' 조치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기관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17. 5.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 감사범위: '14. 5. 24.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7. 2. 20. ~ 2. 24.(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4. 5. 19. ~ 5. 23.(5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6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채납처분
-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장려금 지급 업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인턴지원금 등 지급 적정여부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업무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처리,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II.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 지역은 5개시 1개군(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이며, 행정대상은 **사업장 67,066개소**, **근로자 수는 562,863명**임
- **(지역특성)** 관내 산업은 서비스업(33.2%)과 도·소매업(23.4%)의 비중이 높음
 - 특히, 음식·숙박업(19.4%)과 교육서비스업(5.0%)의 비중이 전국 평균(음식·숙박업 18.6%, 교육서비스업 4.6%)보다 높고, 제조업은 전국평균(14.2%)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고용동향)** '17.1월 기준 대전의 고용률은 **64.6%**로 전국평균(65.5%)보다 **0.9%p** 낮으며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률은 **4.1%**로 전국평균(3.8%)보다 0.3%p 높고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취업자수는 **75만 6천명**으로 '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 추세
 - * (취업자수) '13년 736천명 -> '14년 765천명 -> '15년 777천명 -> '16년 775천명
- **(노사관계)** 관내 노동조합은 218개소, 60,386명으로 **9.9%의 낮은 조직률**(전국 10.2%, '15년)을 보임
 - * 한국노총 80개소(29,292명), 민주노총 14개소(12,742명), 미가입 124개소(18,352명)
- **(직원현황)** 정원 277명 중 현원은 248명으로 **29명 결원(충원율 89.5%)**
- **(기관평가)** '16년 8개 청 중 2위('15년 2위)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 실업급여 지급 업무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점검 등은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신고사건 처리, 사업장 감독,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및 인·허가 승인 업무 등이 미흡

○ 산재예방지도 업무

중대재해 조사 업무는 대체로 양호하나,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와 과태료 부과 업무 등 사업장 감독 관련 업무가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총괄(건, 명)				신분상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행정상조치(건)				모범 사례 (인원)
실 지적 건수	신분 상 조치	재정 상 조치	행정 상 조치	소 계	징 계	경 고	주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소계	시 정	개 선	권 고	
17	52	1	5	52*	-	2	50	96	24	-	72	5	2	3		

*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42명(중복 처분자 상담8급 △△△ 등 9명)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① 당직관리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당직 대체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당직자 26명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당직을 임의 대체하도록 함
- (조치사항) 당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8급 □□□ 등 2명 '주의' 조치

② 국고금 관리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기관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실업급여 반환금 등 13,885,050원(70건)을 11일 ~ 135일 지연하여 국고 수납
- (조치사항) 5건 이상 지연 수납한 행정8급 ■■■■ '주의' 조치

③ 공무원 근무(유연근무제) 사항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유연근무제 활용자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6급 ★◎■ 등 51명이 출·퇴근 등록을 소홀히 함
- (조치사항)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무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도록 조치

④ 직업정보제공업체 지도·점검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14년 3/4분기 지도·점검 미실시(25개소)
- (조치사항)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6급 ●●● '주의' 조치

⑤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 처리 부적정(회수 및 환급)

- (위반내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연간임금 확인을 소홀히 하여 지원금 과다 또는 과소 지급(과다: 2건 24,640원 과소: 1건 71,920원)
- (조치사항) 과다·과소 지급된 지원금 96,560원에 대하여 '회수 및 환급' 조치

⑥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처분 시 처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않는 등 부적정 처리(36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상담8급 ○●● 등 5명 '주의' 조치

⑦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도·점검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미실시(5개소)
- (조치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상담8급 ○○○○ '주의' 조치

⑧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정기 지도감독 계획 관련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후 점검대상을 내부결재 없이 일부 변경('14년도 21개소 축소, '15년도 4개소 추가)
- (조치사항) 정기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상담8급 ★○● '주의' 조치

다. 감독 분야

①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46일~115일간 방치하여 처리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
- (조치사항) 신고사건을 100일~115일 방치 등 신고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정 6급 ☆○○ 등 2명 '경고' 조치
- 1건 이상을 30일 이상 방치하여 지연 처리하거나, 반의사불벌 신고 사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정 7급 ◇◇◇ 등 11명 '주의' 조치

②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지명수배(통보)자의 소재발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접수하여 출석요구, 소재수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접수하지 않고 미조치(178일)
- (조치사항)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처리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행정 6급 ☆○○ '주의' 조치

※ 행정 6급 ☆○○ ①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 내역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③ 사업장 감독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최근 3년간 동일한 범위반 사업장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누락(11건), 사업장 감독 후 결과보고 지연(4건), 시정여부 확인 및 확인점검 결과 보고 소홀(12건) 등
- (조치사항) 사업장 감독업무 등을 소홀히 한 행정 6급 ※★★ 등 11명 '주의' 조치

④ 인·허가 등 승인업무 처리소홀(주의)

- (위반내용) 인·허가·승인 관련 민원서류를 33~56일까지 지연 처리(9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연·소급 처리한 행정7급 ◇◆◇ ‘주의’ 조치

⑤ 근로자 파견사업 관리업무 소홀(시정)

- (위반내용) 근로기준법 위반 파견사업주(1개소), 파견 사업보고 미이행 파견사업주(1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미실시, 상시 5인 이상 파견업 허가기준 미달 의심 파견업체(22개소) 조사 업무 소홀
- (조치사항) 근로기준법 위반, 파견사업 보고를 하지 않은 파견 사업주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후 ‘필요한 행정처분’ 조치

라. 산재예방 분야

①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20~55일을 지연하여 시정결과를 보고하였음에도 범죄인지 등 조치없이 종결(11건)
- (조치사항) 관련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공업7급 ◆◆◎ 등 2명 ‘주의’ 조치

②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작업중지명령 후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장 확인없이 명령 해제(54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개선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9명 ‘주의’ 조치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미조치(주의)

- (위반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부적정'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착공중지명령 등 사후 조치 미실시(2건)
- (조치사항)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2명 '주의' 조치

④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횟수 기준 미준수(17건, 9,108천원 과소 부과)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2명 '주의'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기관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2017. 5.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대상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2. 감사 범위: '14. 6. 21.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 기간 및 인원

○ 기간: '17. 2. 20. ~ 2. 24.(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4. 6. 16. ~ 6. 20.(5일간)

○ 인원: 감사담당관 외 4명

4. 감사 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채납처분

○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임금채권보장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작업 중지명령,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II.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지역은 5개 시(안양시·광명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로
사업장 53,508개소, 근로자수 286,434명('17.1월 기준, 고용보험통계)
- **(지역특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75.8%(40,558개)를 차지,
300인 이상 사업체는 0.19%(102개)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5.3%(13,516개)로 가장 높고, 음식숙박업 16.5%(8,823개), 제조업 14.7%(7,839개) 순
- **(고용동향)** 안양지역 고용률은 56.3%('16.4월 기준)로 전국 평균(60.3%)
보다 낮고, 실업률은 4.4%로 전국 평균(3.9%)보다 높음
 - 안양지역 취업자는 706,100명으로 전년 하반기('15.10월 기준) 대비 3,600명 증가(▲0.5%)
 - 실업자는 32,900명으로 전년 하반기('15.10월 기준) 대비 1,300명 감소(▼3.8%)
- **(노사관계)** 관내 노동조합 94개소(조합원 13,556명) 중 한국노총 48개소
(9,563명), 민주노총 4개소(1,357명), 상급단체 미가입 42개소(2,636명)
- **(산업안전)** '16.11월 기준 산업재해율이 0.40%으로 전국(0.45%) 대비
낮은 수준
 - ※ 산업재해율: 0.44%('14.11)→ 0.41%('15.11) → 0.40%('16.11)
- **(직원현황)** 17.2.16. 기준, 정원 108명, 현원 104명(충원률 96.3%)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 취업지원 업무, 고용보험 업무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정산업무 등은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 임금채권업무,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업무가 일부 소홀

○ 산재예방지도 업무

- 사업장 감독 확인결과 보고지연 및 과태료부과 업무 등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실제 조치 건수	총괄 조치 건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천원)				행정상조치(건)			모범 사례 (명)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소 계	징 계	경 고	주 의	소 계	회 수	추 징	기 타	시 정	개 선	통 보	
15*	9	2	2	17**	-	6	17	9,194	9,194	-	-	1	-	1	-

* 신분상 조치대상자가 1명인 3건은 '경고'로 병합 처분하여 실제조치건수가 총괄조치건수보다 많음

**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5명(중복 처분: ○○○ 등 2명)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 조사 분야 포함)

① 계약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하나 5인 미만을 지명하는 등 계약 업무 소홀(9건)
- (조치사항)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 '주의' 조치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체 지도·점검 미실시(주의)

- (위반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매분기 지도·점검하여야 하나 '14. 2/4~4/4분기 지도·점검 미실시(5개소)
- (조치사항)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 '주의' 조치

③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지급 부적정(회수)

- (위반내용) 정년연장 후 신규 채용된 경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 900,000원 과오 지급(1개소)
- (조치사항) 지원금 900,000원 '회수' 조치

※ 부적정 지급 건이 1건인 점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 생략

④ 인턴지원금 부정수급(회수)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2개소 2명, 지원금 8,294,020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8,294천원 '회수 등' 조치

※ 지급 당시 알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 생략(진정사건 확인)

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정산 소홀(통보)

- (위반내용)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정산 시 전년도 인쇄비*에 비해 현저히 인상된 금액을 사업비로 정산(부정수급 의심)
* 훈련생 모집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15년 900부를 3백만 원 집행('14년 1,000부에 1백만 원 집행)
- (조치사항)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⑥ 일학습병행제 부정행위 신고 접수절차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부정행위를 자진신고(구두)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즉시 접수하지 않고 조사완료 후 접수
- (조치사항) 부정행위 신고내용을 즉시 접수하지 않은 ○○○ '주의' 조치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① 신고사건 처리 업무 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나 처리과정에서 43~99일간 방치(13건)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
- (조치사항) 신고사건 업무를 소홀히 한 ○○○ 등 6명 '경고', △△△ 등 5명 '주의' 조치

②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 소홀(①과 병합 경고)

- (위반내용)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시 출석요구, 소재수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지연 조치(4건)
- (조치사항) 업무를 소홀히 한 ○○○은 '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③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등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업장 감독 후 결과보고 지연(3건), 사업장 감독결과 조치지연(1건) 및 기한 내 미보고 사업주에 대해 적정한 조치 없이 시정결과 수보 후 종결(4건), 사업장 감독 확인감독 보고지연(8건)
- (조치사항) 사업장 감독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 '주의' 조치

※ △△△은 ① 사항과 병합하여 '경고'

④ 인·허가 등 승인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인·허가, 승인 관련 민원서류를 30~71일까지 지연 처리(16건)
- (조치사항) 인·허가 등 승인업무 등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 '주의' 조치

※ △△△은 ① 사항과 병합하여 '경고'

⑤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소홀(시정)

- (위반내용) 도산등사실인정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 미운영
- (조치사항)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조치

⑥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횟수를 잘못 적용하여 과태료 과소 부과(8건)
-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 '주의' 조치

다. 산재예방 분야

① 감독결과 조치 확인업무 소홀(나-①과 병합 경고)

- (위반내용) 시정지시에 대한 결과를 수보하고도 인사발령시까지 확인감독을 미보고(5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은 '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②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신고사건 처리 소홀(나-①과 병합 경고)

- (위반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36~100일간 방치(4건)
- (조치사항) 신고사건 4건을 소홀히 처리한 ○○○은 '신고사건 처리업무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종합감사결과

(기관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2017. 5.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대상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2. 감사범위: '14.7.26.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7.3.6.~3.10.(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4.7.21.~7.25.(5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6명

4. 감사중점 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채납처분

○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임금채권보장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작업중지명령,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II.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지역은 3개시(김해·양산·밀양시)로 **사업장 36,173개소, 근로자수 306,400명**

※ 자료 : '16년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지역특성)** 관내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인근 부산·창원 등에서 유입된 **중소제조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재

* 김해(12개<일반4개, 농공8개>), 양산(6개<일반5개, 농공1개>), 밀양(8개<일반2개, 농공6개>)

- 10인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및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

* 관내 36,173개 사업장 중 10인미만 사업장 30,045개사(83%), 제조업체 10,499개사(29%)

- 지역별로는 김해지역은 조선기자재 업체, 양산지역은 자동차 2차·3차 협력업체가 다수 소재

- **(고용동향)**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16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국(63.2%)·경남(62.6%) 평균보다 낮고

- 고용률(김해 60.4%, 양산 58.8%, 밀양 61.3%)과 실업률(김해 2.8%, 양산 3.0%, 밀양 1.6%) 모두 각각 전국 평균(61.1%, 3.4%)에 비해 낮은 수준

- (취업자) '17.1월말 기준 취업자수는 1,12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63명)

- **(노사관계)** 관내 109개(15,869명)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노총 58개(10,889명), 민주노총 15개(1,574명), 미가입 36개(3,406명)

- 최근 3년간 3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으나 원만히 타결되는 등 지역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 **(직원현황)** '17.3.6. 기준, 정원 102명, 현원 98명(충원률 96.1%)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업무

- 고용관리, 청·장년인턴지원금 지급 업무 등이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근로감독,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처리 업무가 일부 소홀

○ 산재예방지도 업무

- 중대재해 조사 업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사업장 감독 등 사후 조치 및 작업중지명령 사업장 개선여부 확인 업무 등이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총괄(건, 명)				신분상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행정상조치(건)				모범 사례 (인원)
실 지적 건수	신분 상 조치	재정 상 조치	행정 상 조치	소 계	징 계	경 고	주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소계	시 정	개 선	권 고	
12	20	4	2	20	-	2	18	2,731	2,731	-		2	1	1		

*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5명(중복처분자 행정□급 ○○○ 등 5명)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분야 포함)

① 국고금 관리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기관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실업급여 반환금 등 8,903,110원(11건)을 6일~281일 지연하여 국고 수납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연 수납한 행정□급 ○○○ 등 2명 '주의'

② 출장비 지급업무 소홀(주의, 회수)

- (위반내용)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한 ○○○ 등 6명에게 출장비 118,000원(14건) 부적정 지급
- (조치사항)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비(118,000원)를 '회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급 ○○○등 2명 '주의'

③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부적정(회수)

- (위반내용) 수급자의 재취업일을 잘못 적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 과다 지급(1명, 321,410원)
- (조치사항) 과다 지급한 321,410원 '회수 등' 조치

④ 청년 취업 인턴지원금 부정수급(회수)

- (위반내용)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1개소 1명, 지원금 492,250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등 492,250원 '회수 등' 조치

⑤ 장년 취업 인턴지원금 부정수급(회수)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1개소 1명, 지원금 1,800,000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등 1,800,000원 '회수 등' 조치

⑥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활동상황 모니터링 소홀(시정)

- (위반내용)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해외 출국자 등에 대해 방문 상담 등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 상담일지 작성, 센터는 '고용안정 정보망(www.work.go.kr)'을 통해 제공되는 '부적정 수급 대상자 정보'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소홀
- (조치사항) 상담일지를 허위로 기록(보고)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 '알파커리어' 등 3개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민간위탁기관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시 제공되는 변동정보 활용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①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하나, 38~118일간 방치(10건)하여 처리
- (조치사항) 신고사건을 63~118일간(3건) 방치한 행정□급 ○○○, 102~108일간(2건) 방치한 행정□급 ○○○ 각각 '경고' 조치
※ 경고: 방치기간 120일 이상 1건, 90일 이상 2건, 60일 이상 3건 이상
- 1건 이상을 30일 이상 방치하여 처리한 행정□급 ○○○ 등 5명 '주의' 조치

②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시 출석요구, 소재수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96일간 관련 조치를 하지 않거나(2건)
- 피의자가 자수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에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 하여야 함에도 21~85일이 경과하도록 미조치(5건)
- (조치사항) 소재발견통보서의 처리를 장기간 방치하여 처리한 행정□급 ○○○ '주의' 조치

※ 지명통보자 해제업무 부적정 건이 3건 미만자는 신분상 조치 생략

③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감독결과 및 확인감독결과 보고를 지연(14건)하거나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주에 대해 범죄인지 미실시 등 조치 부적정(9건)
- (조치사항)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급 ○○○ 등 3명 '주의' 조치
※ 행정□급 ○○○은 '㉠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과 병합하여 '경고'

④ 인·허가 등 승인 업무 처리 지연(주의)

- (위반내용) 인·허가 등 승인 신청 관련 민원서류를 33~60일 지연 처리(7건)
- (조치사항) 인·허가 업무를 3건 소홀히 한 행정□급 ○○○ 등 2명 '주의' 조치
※ 행정□급 ○○○, ○○○은 '㉠ 신고사건 처리업무 부적정'과 병합하여 '경고'

다. 산재예방 분야

① 사업장감독 등 업무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지도감독 결과 과태료부과 업무 부적정 처리(4건), 시정결과 보고 확인복명 지연 등 사업장감독 사후조치 소홀(5건)
- (조치사항) 사업장감독 등 업무처리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급 ○○○ '주의' 조치

② 작업중지명령 사업장 개선여부 확인 소홀(주의)

- (위반내용)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 해제요청이 없을 경우, 현지 방문하는 등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10건)
- (조치사항) 개선여부 확인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급 ○○○ 등 2명 '주의' 조치

